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13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9월 4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4년 8월 12일 김경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005호)과 같은 날 최기찬 의원 외 20명이 공동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028호)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,

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 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임산부가 시립 문화·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- 고령층을 포함한 디지털약자가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·전화·현장방문 등 예약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도록 규정하여 디지털약자를 배려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함.
- 다만, 의안번호 제2028호의 원안 내용(안 제4조제5항)에 다소 중복적인 표현이 있는바 이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였음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예약 방법을 다양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5항).
- 나. 체육시설 입장료 면제 대상에 “임산부 본인”을 추가함(안 제9조 제3항제5호).
- 다.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액 대상에 “임산부 본인”을 추가함(안 제10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).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예약 방법에 있어 취약계층의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·전화·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 : 면제

제10조제1호가목 중 “수급자”를 “수급자,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수급자”를 “수급자,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9조(입장료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</p>	<p>제4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예약 방법에 있어 취약계층의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·전화·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u></p> <p>제9조(입장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 : 면제</p> 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</p>

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

가. 18세 이하인 자(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65세 이상인 자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분의 50 감액

나. ~ 바. (생략)

2.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

가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

-----.

가. -----

-----수급자, 「서울

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

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

부 본인-----

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.

가. -----

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분의 50 감액

- 나. ~ 사. (생략)
- 3. ~ 5. (생략)

-----수급자,
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
임산부 본인-----

- 나. ~ 사. (현행과 같음)
- 3. ~ 5. (현행과 같음)